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[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]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, '폐문부재'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9. 8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



1. 건 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
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현장명	퇴직공제부금 미납액	공시송달 내용
명성종합건설주 식회사	2301-11-*****_*	울산 중구 종가17길 24-23(서동)	이**	웅촌 대복 도시계획도로(중2-155호) 확포장공사	2026. 3. 공제부금 448,500원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 진술 및 자진납부 촉구

4. 공고기간: 2026. 9. 8. ~ 2026. 9. 23.

5. 문의: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(담당: 노현주, 052-228-1818)